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13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안내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,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주 소
				사전통지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
1	이○민	04. 6.17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안내	지속적인 연락두절,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 출석통지서 발송 및 출석요구('26. 4.13., '26. 5.18.)에 응하지 않음	○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참여 제한	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 60-7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7. 13. ~ 2026. 7. 2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(Tel. 조성현 02-2004-703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